



종합평가

제 1 장 심의위원 평가

제 2 장 결산좌담

바람직한 저널리즘이 추구해야 할 선거보도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위원 문명호

언론의 영향력과 선거보도의 사명

언론은 요약하면 진실, 사실 보도 그리고 정확, 공정 보도를 그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다. 저널리즘에선 여러 가지 보도 준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공정 보도만큼 더 중요한 요체는 없다. 만일 언론이 사실, 공정 보도에서 벗어난다면 그 언론은 이미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국가를 이끌어 갈 지도자나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객관적 사실과 공정한 시각에서 벗어난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는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가이드라인의 준수가 필요하다. 여론이 중요해진 오늘날의 선거는 예전보다 매스 미디어의 보도에 거의 선거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재된 매스 미디어의 보도 내용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미국 등 서구에서 효과적 선거 홍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황금 시간대의 TV시간을 사는 것도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황금 시간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문이 어떤 보도 태도를 보였는가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이동한의 '16대 선거보도 분석'에서 인용, <http://blog.naver.com/leedh2013/150079130480>)에

의하면 발행 역사가 오랜 서울의 한 중앙지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파행적 관행이 지적되었다.

“선거 보도에서 과거에 비해 객관성과 형식적인 공정성을 지키려는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동일 주제를 같은 내용으로 다룬 패키지 보도, 기계적 중립에 힘 쓴 형식적 공정 보도, 후보 중심 보도, 질적 편파성 보도가 두드러졌다. 또 여론조사를 보도하며 승부에만 집착하는 경마식 보도, 흥미위주 보도. 사실 확인과 검증이 안 된 풍설 보도, 가십성 보도, 선거 무관심과 유권자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부추길 부정적 보도, 해묵은 지역감정과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지역주의 조장 보도가 여전했다.”

유권자나 대중에게 전달하는 보도 과정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스 미디어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보나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전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해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 두 선거를 통해 본 전국의 갖가지 보도 사례들을 선거기사 심의위원으로 접하며 “아직도 이런 언론 아닌 언론이 활동하고 있는가.”하고 놀라고, 필자 역시 평생 언론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한 한 언론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국내와 해외에서 겪어온 사실 확인의 중요성

그러면 먼저 사실 보도를 위해 기자를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가를 정통 언론 코스를 밟은 언론인들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 한다. 보통 수습기자(견습기자) 라고 하면 1년 (필자의 경우 약 1년 반) 정도의 훈련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수습기자는 선배 기자들을 따라 국회나 행정부 또는 주요 경제 단체, 법원, 검찰, 경찰 등 현장 취재에 나서며 선배들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캐치하고 이를 확인하며 기사를 작성하는 가를 직접 현장에서 배우게 된다. 물론 수습기자들에겐 직접 기사를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요즘엔 어느 정도 훈련을 거친 수습기자에게도 기사를 작성시키는 데도 있다).

필자가 처음 사회부 견습 기자로 일 할 때였다. 광화문 네거리에 있던 책방 송문사에 들렀다가 한 영어사전에서 ‘동해’ 영어 표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 곧 그 사전을 사가지고 신문사로 들어와 데스크에 보고했더니 기사를 써서 넘기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당시엔 철필로 잉크를 찍어 끄꽂대며 쓴 기사를 데스크에 갖다 주자, 데스크는 선배기자에게 넘겨주며 다시 작성토록 했다. 분명 무엇인가 부족한 데가 있는 기사였을 것이다. 기사는 신문에 나갔지만 그 기사는 내 기사가 아니었다. 그 때 느꼈던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수습기자들은 현장에서 선배 기자들로부터 무엇 무엇을 확인하고 누구누구를 만나 얘기를 듣고 관련 자료들을 입수해 오도록 지시 받는다. 사진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와 보고하면 선배 기자는

기사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견습이 거의 끝날 무렵, 밖에서 땀 흘려 취재해 작성해 넘긴 기사를 당시 명 사회부장으로 유명했던 L부장은 한두 장 넘겨보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기도 했다. 눈물이 쑥 빠졌다. 데스크는 필자가 취재한 기사가 완벽하지 않은 기사였기 때문에 다시 취재 지시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런 몇 십 년 후 필자가 데스크가 되어 기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지시는 사실 인가를 확인 또 확인 그리고 또 확인, 적어도 세 번 이상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수습기자 제도가 없다. 기자가 되기 위해 저널리즘 스쿨에 들어간 학생들은 대학 시절부터 엄격한 취재 및 편집 훈련을 받는다. 미국 최초의 저널리즘 스쿨로 유명한 미주리 대학의 저널리즘 스쿨에선 학생들이 <미주리언>이란 제호의 신문을 직접 제작한다. 학생들은 담당 교수들의 엄격한 지도 아래 기사를 쓰고 이를 편집해 신문을 만드는데 이 <미주리언>은 상업지로 그 지역 컬럼비아 주민들이 구독료를 내고 구독한다. 특이한 것은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상업지보다 구독자 부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기사가 그만큼 정확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다.

미주리대학의 <미주리언>지는 워싱턴 D.C에 학생 특파원까지 파견해 필자의 워싱턴 특파원 사무실이 있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사무실을 두고 직접 취재 활동을 벌였다. 이들 학생 기자들의 신문 제작 활동은 그대로 학점이 된다. 그리고 이들 엄격한 취재보도 훈련과 이론을 갖춘 저널리즘 학도들이 졸업 전후로 로컬 페이퍼(지방지)에 스카우트 되어 졸업과 동시에 기자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로컬 페이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기자들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 스트리트 저널> 같은 권위 있는 신문에 스카우트 되어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고(故) 제임스 레스턴도 한 지방지로부터 시작해 필명을 높인 당대의 언론인이었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얼마나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실례를 필자의 경험에서 들겠다. 필자는 동아일보의 워싱턴 특파원과 베트남전 기간, 동남아 순회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저명인사들을 인터뷰했다. 가령 한국 기자 최초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서면 인터뷰 했을 때나 유명한 경제학자로 미국의 주인도대사를 지낸 하버드대학의 존 케네드 갈브레이드 박사, 카터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박사와의 신년 인터뷰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인공심장을 개발해 세계 학계로부터 '인공심장의 창시자'로 존경받은 유타대학의 윌렘 J 롤프 박사, 인도네시아의 존경받은 언론인 목타 루비스, 필리핀의 하이메 신 대주교, 월남 패망 전 베트남의 트란 반 투엔 등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기사 작성 후 그들이 말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맞지요"하고 확인하곤 했다.

인터뷰 중 가령 국가 안보와 관련된 얘기들을 주고받는 인터뷰에선 상대방으로부터 보도를 해선 안 될 민감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대목을 보도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몇 번이나 확인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곤 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고위 공직자가 한창 얘기하다 보면 국가 안보상에 미

칠 영향을 미쳐 생각지 못하고 아주 민감한 내용을 밝혔을 경우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를 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고 환기시켜 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80년대 당시, 미 하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의 미국 기자들을 동반한 판문점 통과 북한 방문 비밀 교섭 같은 것이다. (결국 기자 동반의 판문점 통과는 북한 측에서 거부해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과의 이 비밀 교섭은 처음부터 보도가 될 경우, 방문 교섭 자체가 깨어지는 내용이었다. 대서특필할 수 있는 특종감이었지만 남북한 관계와 국가적 이익을 위해선 보도를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런 경우 기자로서 기사를 못 쓰거나 특종을 놓치게 되지만 국가 안보에 아주 민감한 내용이 보도될 경우, 남북한 관계 또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사를 쓰지 못한 대신 상대방 고위 공직자와의 신뢰가 두터워져 그 후부터 더 많은 고급 정보와 배경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취재 기자와 정보 소스와의 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보도, 공정한 보도야말로 서로 간에 신뢰감을 높여 주는 것이다.

사실 보도와 관계된 확인 절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사례를 하나 더 들겠다. 필자가 1977년 베를린 국제신문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가 있을 때였다. 매주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구의 권위 있는 신문으로부터 강사진이 베를린으로 초빙되어 와서 특강을 했는데 한번은 영국 <더 타임스>의 부국장이 와서 강의를 했다. 그 강사는 오후 시간에 유럽과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온 현역 기자들에게 카메라를 나누어 주더니 베를린 거리에 나가 기사가 될 만 한 좋은 사진 스케치를 해 오라고 지시했다.

필자도 베를린 중심가인 쿠퍼슈텐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길바닥에 성모 마리아 상을 크게 잘 그려 놓은 한 거리의 화가를 발견했다. 마리아 상 옆에는 행인들로부터 동전을 구하기 위한 빈 깡통이 놓여 있었다. 좋은 스케치감이었다. 그 즉시 성모 마리아 상과 짧은 거리의 화가를 카메라에 몇 장 담았다. 연구소로 돌아와 현상된 연구원들의 스케치 사진들을 살펴 본 영국 강사는 필자의 스케치 사진이 좋아 신문 제작에 쓸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물었다. “이 사진을 찍고 난 후 젊은 화가에게 이 사진을 신문에 써도 좋은 가하고 동의를 구했는가?” 필자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영국 강사는 “그렇다면 이 사진은 신문에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젊은 화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이상 만일 신문에 게재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신문에 게재된 사진을 보게 된 화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동전을 구하고 있는 이 젊은이를 보고 크게 실망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었다.

베를린에서 서울로 돌아와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며 혹시라도 명예훼손이나 사실 보도 지침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고민하다 보니 한동안 글이 잘 써지지 않았다. 이처럼 기사 취재나 보도는 저널리즘의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기자는 객관적 사실 보도와 공정 보도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기사심의에서 발견된 언론의 문제점

그런데 지난 1년간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갖가지 보도 사례들을 보면 꼭 선거보도 기준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보도 기준에도 맞지 않고 상식선에도 어긋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아 아연할 뿐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민주사회로 크게 발전해 오늘날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의 일원이며 세계의 지도국인 G20 국가 중의 당당한 일원인데 그런 사회 곳곳에 이런 바른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언론’이 활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 보도 사례에서 보듯 선거기사 심의기준과 저널리즘의 일반적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추후에라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일부 ‘보도 관계자들’의 태도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 일간지는 대통령 선거 전인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특정 예비 후보자의 신상과 행보에 비판적인 칼럼을 계속 게재하면서 단정적이고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는 한편,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부정적인 사실만 선별, 적시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선심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 일간지 칼럼의 제목은 특정 후보자 즉 ‘OOO, 국민을 바보로 아나?’, ‘OOO,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OOO, ‘꼼수정치’부터 배웠나?’ 일색이었다. 위 보도는 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상 공정성, 형평성 등 위배로 사과문 게재 조치를 받았는데 이 매체는 과거 선거 때마다 지극히 편파적인 칼럼을 계속 실어 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단골로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광고면도 아닌 보도 기사면에 특정 후보자의 출마 선언문과 성명서, 자세한 이력 사항을 후보 측에게서 받은 그대로 옮겨 놓은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경남지역 K주간지 2012년 1월 18일자 7면 보도이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 아들 OOO,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한 평생 농사일을 천직으로 여겨 고향을 떠나지 않으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생을 걱정 없이 사셔야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미래를 꿈꾸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새로운 △△△, OOO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 아닌 출마 선언문 바로 뒤엔 이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등 주요 경력이 일목요연하게 붙어 있으며 이어 1월 21일자 1면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다. “OOO 후보의 OO당 입당은 그동안 입당 불가능을 주장하며 OOO를 압박해 오던 타 경쟁 후보자들에게겐 새로운 큰 짐으로 등장한 반면 OOO은 발목에 매여 있던 족쇄를 풀고 훨훨 날게 되었으며....”(이하 생략)

역시 특정 후보자의 ‘출마 인사’를 그대로 전제한 경기도 한 주간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은 소명을 위해 심사위원회에 나온 자리에서 취재나 기사 작성, 편집 등 저널리즘의 기초 과정도 밟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혼자 기사를 쓰고 제작하는 입장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해 심사위원

들의 탄식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다. 심사위원회에 소명 차 나온 어떤 지역 매체의 편집인들은 때로 특정 인물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지역 신문의 특수성과 경영상의 애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 매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엄연한 언론이고 매스 미디어인 이상 저널리즘의 일반적인 보도 원칙이나 특히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 더 놀라운 일은 심의에 회부된 해당 매체 측의 소명이 한결같이 “국민과 독자들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거나 합당한 증거나 근거도 없이 무조건 “사실보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저널리즘에선 공정성(Fairness)의 요체로 객관성(Objectivity)과 공평성(Impartiality)을 들고 있다. 공정성이란 기자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선입관 또는 편견을 버리고 취재 대상을 동등하게 대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려 할 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취재 현장에서 뛰다 보면 이 같은 저널리즘의 정도가 그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 또는 단체의 호의를 받아선 절대로 안 되며 편파적인 또는 개인이나 단체의 홍보물을 그대로 기사화해선 안 된다. 앞서도 말했지만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홍보물도 사실 여부, 과장 편파 왜곡 여부 등을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거관련 기사나 글, 홍보물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사회에서 공정 보도를 위한 지침은 엄격하다. 더구나 선거 보도에 있어 취재 기자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요하고 있으며 후보자와 정당을 어떻게 취재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거 보도와 관련된 보도 칼럼의 수와 길이, 방송 회수까지 정해 각 후보자를 공정하게 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엄격한 가이드라인은 자칫 잘못된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줘서 결과를 돌이킬 수 없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된 사례들에서 보듯, 후보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거나 위원회 자체 조사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건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심의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 있는 것보다 해당 언론사의 소명에서 보듯, 심의 지적된 내용 중 상당수의 보도 행태가 저널리즘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재 보도 수준에 못 미치고 또한 ‘언론’의 기본적인 자질에도 못 미치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앞서 보듯, 후보자 개인 홍보문을 그대로 옮겨 싣고도 이를 취재 기자의 기사라고 하는 데는 그저 아연할 뿐이다. 이는 주간지 등 일부 매체에서만 지적된 사례들이지만 방송이나 인터넷 등 전 매스 미디어 매체를 검색해 보면 그 범위와 위반 내용은 더욱 더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엔 요즘 언필칭 ‘언론’이라고 하여 쏟아져 나오는 과장, 허위 ‘보도’들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성 또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선 주의 권고 경고 사과문 게재 등 제재조치가 심의위에 의해 가해진다. 그러나 현행 제재 조치는 거의 솜방망이에 가깝다. 선진 사회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언론인, 언론은 법적 제재에 앞서 그것으로 언론인, 언론으로서의 끝이

다. 이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 즉 언론의 자유는 책임 있는 보도와 신뢰받는 언론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저널리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도 없고 또 주어져서도 안 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대통령선거기사심의위에서 지난 해 4월 총선이 끝난 이후 12월까지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매체들의 심의기준 위반 내용(자체심의 47건, 시정요구 4건, 재심청구 3건)을 보면 대체로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 여론조사 보도기준과 의견광고제한 위반 등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언론 매체들이 아직도 저널리즘의 기본과 보도 원칙 그리고 그 사명과 책임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를 개의치 않거나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 윤리마저 알지 못하거나 개의치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한 가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재조치가 주의나 권고, 경고로 권고나 주의 조치가 가장 많고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조치는 단 한 건씩이었다. 이는 과연 권고나 주의조치로 잘못된 보도가 시정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한다. 더욱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고도 계속해 선거보도 기준을 위배하는 매체들이 적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숨방망이’로 가볍게 보거나 저널리즘의 기본이나 언론의 책임과는 ‘무관한 듯한’ 불성실한 태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언론의 바른 역할을 위한 제언

이제 결론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저질 보도’ ‘저질 언론’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언론사 등록 요건을 강화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2010년 2월에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제3조), 등록(제9조),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조), 결격사유(제13조)등 신문 등록에 관한 제반 규정들이 정해져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법률로서 보장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특히 1960년대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언론윤리위법’ 반대투쟁을 겪고 계엄 하에서 한때 신문검열을 받기 위해 신문대장을 들고 지금의 시청에 차려진 검열관실에 가져가 검열을 받으며 기사가 마구 찢려 나가는 고통을 겪었던 필자로서는 언론자유를 옥죄려는 어떠한 기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책임과 언론윤리의 준수가 뒤따른다. 언론 자유라고 해서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전혀 무지한 아무나 ‘매체’라는 것을 만들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멋대로 ‘보도’하고 불공정, 편파, 왜곡, 명예훼손을 ‘보도활동’이라는 포장으로 일삼는다면 이는 사

회에 심각한 해독을 끼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모든 언론활동은 그것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적 또는 윤리적 지침을 존중토록 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고찰해 보면 제13조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기간행물의 진흥 관련법, 저작권법,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대상자의 결격은 당연하다.

그런데 신문 또는 인터넷 등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려는 사람이 과연 언론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윤리적 기준 등을 갖추고 있는가는 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등록을 받는 관계 부처가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그렇다고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원 및 시설과 역시 무자격자인 인력을 갖추어 언론 매체로 등록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언론 매체의 등록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거나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전문 언론단체가 최소한 자격 검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마도 더 좋은 방안도 있을 것이다. 즉 책임 있는 언론 매체의 창업을 위해서는 재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도활동에 종사할 소정의 자격을 갖춘 편집인 등 보도인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시설만 갖추고 등록만 한다고 아무나 ‘언론’이라고 한다면 이는 한때 우리 사회의 병폐의 하나였던 ‘사이비 언론’을 양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대중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둘째, 선거기사 심의기준에 위배된 매체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사회 전체에 해독을 끼치기 때문이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제재란 주의, 경고나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 같은 것이다. 여기에 당장 언론사가 불복할 경우 선심위에서 자체 이행을 담보할 권한은 없다. 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매체를 고발조치 할 수 있을 뿐이다. 심의위원회의 한 법률전문가가 언급했듯이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주의나 경고 받은 사실을 해당 매체가 대외에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제재로 처벌 여부를 떠나 반드시 언론에서 지켜야 한다.

적어도 뚜렷하고도 중대한 불공정, 편파왜곡, 명예훼손 보도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방안이라고 본다. 가령 서구사회처럼 법의 심판에 넘겨진 위배 매체에 대해 최대한의 경제적 배상을 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매체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찍이 서구 사회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 배상 판결로 이를 감당하지 못한 매체들이 문을 닫게 된 사례들이 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자 등 보도요원들이 심의기준을 잘 알고 준수함으로써 불공정 보도나 편파적 보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기자들

도 재교육 재훈련이 필요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대학의 저널리즘 스쿨 같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해 저널리즘의 기초나 언론윤리 같은 것을 다시 연마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인의 전문지식 재충전을 위해서도 좋고 장기적으로 언론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도 필자와 함께 백악관이나 국무부를 출입한 기자들이 1년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들어가 자신의 전문 분야나 뉴 저널리즘 같은 현상을 분석 연마하고 돌아와 다시 보도활동에 더욱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넷째, 선거보도 옴부즈맨 제도나 언론중재위의 심의위원회처럼 불공정 언론 감시기구가 활성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구 선진사회의 예를 든다면 애초 ‘저질언론’이나 ‘사이비 언론’이 발을 붙일 수조차 없지만 (이는 시민과 대중들의 철저한 외면 때문이다) 서구의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권한도 마치 재판관처럼 강하고 존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선 불공정 언론을 감시, 고발 조치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선거법에 의해 운영되는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있지만 이 같은 언론감시 기구들이 상설화되고 그 활동이 법적으로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 사회의 언론은 그 누리는 언론 자유와 함께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갖가지 사례의 선거 기사 보도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허점과 폐해가 보이고 있다.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사회는 언론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필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 졸
동아일보 논설위원
문화일보 이사 겸 논설주간
현 대한언론인회 주필
현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 본 원고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선 선심위를 마치며

- 선거기사 개념과 심의기준에 관한 소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위원 이 준 응

이 글에서 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 이 두 사안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 중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며, 대선 선심위 후 구성된 <선거기사심의 관련 제 규정 개선 소위원회>에서도 의제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선거기사의 개념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에 대한 것이다. 향후 새롭게 구성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선거기사의 개념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중,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안은 문재인 후보(이하 시정요구인)가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사건에서 선거기사의 개념과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시정요구인은 해당 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사라고 주장했고, 선심위는 기사 내용 시정요구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노 전 대통령 재직시 벌어진 일에 대한 기사로 이번 선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 대상 시정요구 건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 두 건을 가로지르는 핵심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기사가 무엇이나는 것이다. 일견 자명하게 보이는 이 사안이 문제가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선거기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제8조의3 1항은 “사실, 논평, 광고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제시할 뿐, 선거기사에 대한 구체적 특성에 대한 다른 기술적 규정이 없다. 요컨대, 조문에 제시된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보아서,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기사로 보느냐, 아니면 좁게 보아서, 선거 과

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정당과 후보 등 당사자와 관련된 경우만을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일단 과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던 경우인 총 4건(제18대 총선 2건, 제5회 지방선거 1건, 제19대 총선 1건) 중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2007년 제18대 총선에서 인터넷 신문의 경우 2건, 2008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시정요구인이 후보직사퇴로 시정요구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1건,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대통령후보를 자처하는 시정요구인의 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1건이다. 요컨대, 시정요구인과 기사내용의 관련성을 들어서 각하한 것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심의위원회가 처음이다.

내 의견을 요약하자면, 적어도 시정요구에 관련한 기사내용과 시정요구인의 관련성을 들어서 ‘기사 내용에 시정요구인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정요구인의 요구를 충분히 살펴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등 본안을 판단해야 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임된 임무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논의의 핵심은 선거기사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선거기사를 구성하는 ‘선거 관련성’이란 직간접적으로 무한한 속성과 특성에서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 수많은 속성과 특성 가운데 선거기사를 구성하는 ‘필수적 관련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필수적 관련성’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서 도출해야지, 상식적 의미나 사전적 정의 등 다른 어떤 기원에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언론이 불공정, 불균형, 비사실적 내용에 기반해서 선거과정 및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에 근거해서 선거기사를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선거기사를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기사’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선거기사를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한다면, 선거기사의 필수 규정요인은 후보자 등 적법한 시정요구인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율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가 되어야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닐 것이다. 특히 시정요구인이 기사 내용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여부와 같은 형식적 요인이 선거기사를 구성하는 필수적 관련성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어떤 후보자가 기사 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해당 선거기사가 유권자에게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판단에 대한 영향이 실제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사 내용의 공정성, 형평성, 사실성을 검토하여 선거결과에 부당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목적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어떤 기사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 기사 때문에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명제는 그저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설명되고 경험적으로 검

증된 연구결과이다. 잘 알려진 언론 효과론의 명제 중에 ‘유권자는 결국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의제설정이론(the agenda setting theory)이라고 불린다. 이 명제를 따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 이미 수많은 연구에 의해 그리고 경험에 의해 확인된 바이기 때문이다. 이 의제설정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 효과이론이 지난 15년 간 제시되고 검증되어왔는데, 이른바 점화효과이론(the priming theory of news)이라고 불린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는 언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사안을 후보자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선거에 임박해서 언론이 안보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유권자는 안보를 기준으로 후보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보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언론이 보수 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언론의 점화효과이론을 근거로 언론의 의도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물론 무리다. 점화효과는 일종의 조건적 효과의 기초, 기여적 효과, 매개적 효과의 배경이 되는 까닭을 밝히는 이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점화효과이론은 한 가지 분명한 경험적 사실을 설명한다. 그것은 언론은 특정 사안을 강조해서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권자가 그 사안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보도가 다층적이고, 다면적이며, 여러 상호작용을 거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따라서 언론보도가 복잡할지언정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런 보도의 영향력이 실제적인지 주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타당하다면, 선거 기사에 직접적으로 후보나 정당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선거기사로서’ 취급하고 그 기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심의 대상으로서의 선거기사는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시킴이 타당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자체 심의의 대상이 되는 기사를 무한정 넓게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동안에 출판되는 기사의 양과 범위를 생각해 보면, 제한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심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모든 선거관련 기사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정요구 건은 경우를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 등 일응 적법한 시정요구인이 ‘선거기사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선거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그 요구가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즉 기사내용의 불공정성, 편파성, 비사실성 등에 의해 선거과정이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선거기사 심의기준의 논리적 일관성, 명확성, 적용가능성이 문제 있다는 지적은 선거기사심의위

원회 내부에서도 반복해서 제기된 문제이다. 2000년 2월 28일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온 선거 기사 심의기준은 실제 심의과정에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심의기준 제2조는 심의원칙으로 (1) 선거기사의 공정성, (2)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의 형평성, (3) 사실에 기초한 객관성, (4) 정치적 중립 등을 제시한다. 심의기준 제3조는 이 네 원칙을 양적, 질적 정도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반복적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준 제4조, 제5조, 제7조는 각각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것으로서 ‘공정하게 다루어 보도해야 한다’,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제시하는데, 이는 심의원칙을 동어 반복하는 문장일 뿐이다. 반면 제6조는 객관성과 사실보도에 대해 6개의 조항을 들어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사항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룰 것, (2)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할 것, (3)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 은폐하는 등 왜곡하지 말 것, (4) 취재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후보나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발언을 그대로 전달하지 말 것, (5)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지 말 것, (6) 대담, 토론 등에서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것 등이다.

제4조부터 7조까지 심의기준만 열핏 보더라도 문제가 많다. 첫째, 체계적이지 않다. 심의기준 제4조, 제5조, 제7조의 내용인 공정성, 균형성, 중립성은 서로 개념적 중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별도의 기준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심의기준 제6조의 내용인 객관성과 사실보도에는 공정성, 균형성, 중립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중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다. 둘째, 추상적이다.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 조항들은 동어반복조의 긍정 명령문을 제시할 뿐 별도의 자세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셋째, 비실용성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비객관적인 선거기사가 실제 선거과정 및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의 3가지 문제와 약간 다른 차원에 속하는,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선거 기사 심의기준이 설정된 논리적 틀이다. 심의기준의 조항이 긍정적 명령문으로 조문화되어 있으며, 그 긍정적 명령문이 지시하는 구체적 언론의 내용이 명료하게 규정되지 않은데, 이는 자유주의 원칙에 모순되는 논리를 암시한다는 문제가 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체에서 ‘국가가 언론이 공정할 것, 형평을 지킬 것, 객관적일 것,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명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가치에 의거해 볼 때, 자명해서 따로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국가는 기본권을 누리는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어떤 누구라도 선하게 행동할 것을 명령할 수 없다. 국가의 명령이 아니라 요구라 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개인이 아니라 제도에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본권을 갖고 있는 어떤 주체의 선한 행동의

제도자요 양심의 개발자 노릇을 할 수 없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공공선이나 국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언론에 대한 명령을 내릴 때, 국가는 신중해야 한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는 언론에 대해 국가는 그저 공정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없다. 국가는 언론이 국가안보나 공정선거 등 공공선을 위협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에 대해 규제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전파라는 공적 자산을 사용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이 정치적으로 불공정한 보도를 하는 등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방송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해 양심적으로 살라고 명령할 수 없듯이, 언론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양심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공정함도 언론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명령이 아닌 국민 또는 언론의 자발적 자율규제라면 논리가 달라진다. 즉 위의 조항이 선거기사 심의기준의 조문이 아닌, 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이라면 긍정적 명령문으로 조문화되어도 문제없다. 자율규제의 논리는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스스로 복종하는 논리적 틀을 따르기 때문에 ‘공정해야 한다’는 식의 긍정적 명령문의 형식이 될 수 있다. 실제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스스로 규정하는 언론 윤리 조항은 이렇게 조문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현화적이고 결의론적으로 들리겠지만 (따라서 대세에 지장이 없는 문제제기라 해도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공직선거법에 조문화된 표현도 개정하는 편이 좋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하면서 “방송 보도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의2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비록 이 조항들은 언론이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에 사실상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배경 논리에 따라서 타당하게 조문화하자면 ‘불공정하게 방송 보도해서는 안 된다’, ‘[선거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불공정성 방송이나 보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조문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렇다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심의기준이 실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성, 편향성, 객관성 기준을 선거기사의 내용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요점은 선거기사를 놓고 보았을 때, 그 기사가 ‘불공정하다’ ‘편향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고 규정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은 공정성과 편향성 기준을 적용시켜 해결할 수 있기에, 별도의 심의기준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나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기사를 심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공정성 기준

공정성은 개념적으로 담론 내적 공정성, 즉 ‘기사 내용의 공표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의 의견이 정당하게 기사 내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식화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정당이나 후보자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에 그 해당 정당 대변인의 해명이나 반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예로, 국토개발에 대한 정부 계획을 보도할 때, (국토개발로 인해 영향 받는 환경은 스스로 말할 수 없으므로) 환경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노동자 단체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 (잠재적 임금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광범위하지만) 경제 전문가의 견해를 포함시키는 것 등이다.

이 원칙을 선거기사에 적용시키면, 어렵지 않게 불공정함을 규정할 수 있다. 기사의 내용이 공표됨으로써 가장 손해(영향)를 받는 자가 누군지 따져서 그의 의견이 해당 기사에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보면 된다. 영향 받는 당사자의 의견을 구할지, 아니면 별도의 대변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지, 또는 해당 기사에 그 의견을 포함시켜야 할지, 별도의 관련기사로 처리하거나 가까운 후속 기사에 포함시킬지 등은 언론사의 편집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불공정함은 정도의 문제일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기에, 현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반복적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균형성 기준

현행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5조는 ‘형평성’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단어의 함의는 ‘균형성’에 비해 양적인 대칭적 균형을 과도하게 암시한다는 점에서 ‘균형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균형성이라 하면,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의 균형성을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다. 양적인 균형은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기사의 양적인 비중을 따지는 것이고, 질적 균형은 후보나 정당에 대한 평가적 강도의 차이를 따지는 것이 된다.

얼핏 생각하면, 균형성 위반, 즉 불균형은 선거기사 심의에서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인다.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기사의 양적 차이와 평가적 함의를 갖는 내용의 경중을 따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오히려라고 생각한다. 공정성과 달리 (그것은 기사의 내용이 포함해야 할 목소리를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주로 형식적 구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규정할 수 있다), 균형성은 어떤 기사에서나 언제나 쉽게 발견할 수 있기에 오히려 형식적인 구성요건으로 삼기 어렵다. 요컨대, 누구나 어떤 기사에서든 어느 정도의 불균형은 항상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6조는 객관성에 대한 것이지만 불균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6항에

보면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사실 있으나 마나다.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로서, 누가 보나 어느 정도 불균형을 감지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바로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기사의 불균형 기준을 적용할 때, 기사내용의 불균형 정도를 따져서 심의판단하려 해서 는 가망이 없다. 그보다 선거기사의 불균형 정도, 즉 양적, 질적 정도가 심해서 그 기사를 보는 유권자의 판단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불균형임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된다. 요컨대, 선거기사의 형식적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균형 여부를 따지기보다 선거기사의 예상된 영향에 대한 효과론적 분석을 통해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만한 불균형인지 판단할 일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론 연구자처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언론기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타당한 효과론적 분석이지만, 선거기간 동안 이런 분석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전례를 활용해서 사려 깊게 판단하는 것이다. 선거기사의 불균형 판단은 불가피하게 과거의 전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양적, 질적 불균형이면 선거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어렵짐작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은 예상된 효과가 산출되는 맥락에 대한 폭넓은 고려와 더불어, 그런 불균형한 보도가 정당한 언론의 활동의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종합적으로 내려야 한다. 예컨대, 주류적 중앙일간지에서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의 사생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그런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후보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평가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후보검증 보도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런 비판적 기사를 쓸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언론윤리적 가치에 따라 보도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균형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3조에 제시된 양적, 질적 정도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반복적 위반 여부 등 판단요인들을 적용시켜야 한다.

객관성 기준

객관성은 개념적으로 ‘명제(또는 문장의 내용)가 그 명제가 지시하는 사물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나 개별 명제의 객관적 일치성을 확인하기란 방법론적으로 어려운 일이며(심지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상 선거기사의 내용이 모두 현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객관성 기준을 언론기사의 요건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언론학에서 말하는 ‘객관성’이란 ‘언론의 객관성 규범’이라고 불려야 하는 것으로, 객관성

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언론인의 행위적 규범의 집합이다. 언론의 객관성 규범은 (1) 의견과 사실의 구분, (2) 인용문의 구분, (3) 역피라미드식 글쓰기, (4) 기자의 취재대상에 대한 감정적 유착배제, (5) 사실주의적 문체의 사용 등을 포함한다. 즉 언론의 객관성이란 과학자나 철학자의 객관성과는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도 이런 ‘언론의 객관성 규범’을 선거기사 심의원칙으로 삼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예컨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고, 인용문을 따옴표로 엄밀하게 구분하며, 역피라미드 식으로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드라이’하게 쓴 기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유권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도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언론의 객관성 규범을 실현한 기사는 지배적인 언론의 규범을 따르는 기사일 뿐, 저절로 선거기사 심의에 면제받는 기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으로서의 객관성 기준은 ‘검증 가능성’ 또는 ‘확인 가능성’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선거기사의 핵심 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기사 내부에 갖추어져 있는지, 만약 실천적 고려에 따라 ‘익명의 정보원’이라고 밝힌 경우이라도 별도의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가 객관성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의 사생활에 대해 비판적인 함의를 갖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그런 비판적 평가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증인이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언론사 측에서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보도할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아닌 정황적 증거나, 정보원이 별도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장하는 경우 등은 ‘검증 가능성’ 또는 ‘확인 가능성’의 충분조건이 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보완적인 근거를 확보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복수의 확인 가능한 증거나 독립된 관점이나 배경을 갖춘 2인의 증인의 존재, 또는 그에 상당하는 확인 가능한 근거의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검증 가능성으로서의 객관성이란 제재의 충분조건은 아닌 것 같다. 즉 검증 가능하지 않거나 확인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선거기사심의회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고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불공정한 기사이면서 확인 가능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거나, 불균형한 기사인 동시에 확인 가능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불공정성과 불균형성이란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적용해서 제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객관성이란 앞서 제시한 두 심의기준, 공정성 기준과 균형성 기준에 따른 결정적 판단에 적용되는 보조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확인 가능한 근거가 없는 선거기사임에 틀림없지만 내용적으로 불공정하지 않거나 효과를 기준으로 보아 불균형하게 기울어지지 않는 기사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선거기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기본이 안 된 기사’ 또는 ‘수준 낮은 기사’일뿐, 그 자체로 ‘선거과정이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는 아닌 것이다. 선거기사심의회위원회는 수준 낮은 기사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현행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6조에 포함된 사항 중에 단지 4항 ‘사실 확인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이

나 비방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규제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검증 가능성으로서의 객관성 기준'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기준 제6조 5항은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약간 애매하다. 나는 이 기준을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여론조사나 전문가의 평가 없이 특정 후보가 승리 또는 패배할 것이라는 요지의 선거기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사를 '객관성 위반'으로 심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타당한 심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기사가 심의대상이 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 이유는 '근거 없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선거에 불공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저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즉 불균형이 문제이고 근거 없이 불균형이어서 심각하게 문제인 것이지, 유권자의 판단이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의하고 제재할 수 없을 것이다.

덧붙여 의견을 제기하자면,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6조 1항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2항 '의견과 사실의 분리', 3항 '과장 또는 축소, 은폐하는 등 왜곡' 등은 선거기사 심의기준이 되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1항은 '다양성 기준'과 '객관성 기준'이라는 구분되는 2개의 기준을 모호하게 혼합시킨 것으로 명료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2항은 누구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의견과 사실의 구분'이란 원칙을 무리하게 선거기사 심의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기준이다. 3항은 얼핏 보기에 정당한 기준 같지만, '축소, 은폐 등 왜곡'과 '언론의 일상적 뉴스 가치 판단, 정당한 게이트키퍼, 관행적 편집, 언론인의 글쓰기 스타일'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역시 실효적 심의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축소, 은폐 등 왜곡'이 엄밀하게 규정되기 위해서는 관점독립적인 사실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전제조건(즉 사실 검증 가능성의 조건)만 충족하면 내가 말하는 제3의 선거기사 심의기준인 객관성 조건이 충족된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프로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학사, 석사)
 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박사
 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본 원고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자심의위원회 결산좌담

♣ 일 시 : 2012. 12. 28.(금) 17:00
♣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 박기동 (심의위원장,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원병설 (부위원장, 배재대 초빙교수)
- 문명호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 박석태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김택근 (전 경향닷컴 사장)
- 권문한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 오세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여종국 (기자심의팀장 및 기자심의팀 직원 1명)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는 좌담회를 열고,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보도 실태와 심의위원회 운영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위원장 : 오늘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4월 22일에 구성되어 자체심의 47건, 시정요구 4건 및 재심청구 3건 등 총 54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사심의팀장 : 금번 선심위의 처리 실적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자체심의를 12건이, 시정요구는 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심의 47건을 결정유형별로 보면, 사과문 게재 1건, 경고 8건, 주의 27건, 권고 11건입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여론조사 보도기준 위반이 12건, 인물 부각이 11건, 의견광고 10건, 정책 비교 금지 위반이 8건, 기고 금지 위반 4건, 인물 비방 및 사실보도 위반이 각각 1건입니다.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총 4건으로, 정정보도문 게재 1건, 취하(반론보도문 게재) 1건, 기각 1건, 각하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선거기사심의위에서는 지난 제17대 대선 선심위보다 다양한 위반 유형을 심의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생각”

박기동 위원장

심의위원장 : 금번 선거기사심의위에서는 지난 제17대 대선 선심위보다 다양한 위반 유형을 심의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선 선심위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의미있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에서 심의위의 상설화 및 여러 개선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바래”

원병설 부위원장

원병설 부위원장 :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서 1년 내내 선거기사심의를 했습니다. 많은 바 소임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론중재위에서 심의위의 상설화 및 여러 개선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선심위가 내린 결정이 주의, 경고가 대부분인데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주의나 경고 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오세현 위원

오세현 위원 :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법조항이 발견되면 중재위 차원에서 정리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심위가 내린 결정이 주의, 경고가 대부분인데 제재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주의나 경고 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에 쟁점이 된 선거기사의 범위 등 기본적인 문제는 향후 심의위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미리 정리하고 심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권문한 위원

권문한 위원 : 이번 대선 기간에 쟁점이 된 선거기사의 범위 등은 기본적인 문제로 향후 심의위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미리 정리하고 심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석태 위원 : 선심위 제재가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좀 더 다양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제재가 언론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언론, 바른 선거를 치르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고 등 제재를 한 이후에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 태도의 개선이나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만일 태도변화가 없다면 제재나 벌칙이 강화되어야”

문명호 위원

문명호 위원 : 각 사회의 분야가 언론을 포함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만,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왜곡된 언론보도가 올해 총선, 대선 심의 과정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향후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각각의 쟁점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기구이긴 하지만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경고 등 제재를 한 이후에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 태도의 개선이나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태도변화가 없다면 제재나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자료를 가지고 언론사를 상대로 교육도 필요합니다.

심의위원장 : 이번 대선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와 관련해서 그동안 당연히 여겨지던 여러 쟁점이 불거진 위원회였습니다. 시정요구를 통해 반론을 요청하는 경우에 반론보도청구회부 조항의 제척기간 적용 문제, 선거기사의 범위 문제,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광고에 대한 심의 여부 문제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원병설 부위원장 : 반론보도청구회부와 관련해서 청구 기간도 중요하지만 청구 내용도 실제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기사의 범위를 정할 때 특정 정당의 유·불리 여부만 보지 말고 기사의 내용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돼서 선거쟁점화한 경우에만 선거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심위는 선

거보도의 불공정성을 신속히 교정하는 제재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의견광고나 상업광고에 대해 선관위의 고발 조치와 별개로 선심위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명호 위원 : 선거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기사 자체가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지를 따져봐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보도인 경우에는 선거기사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요구에도 제척기간이 필요하지만, 현행 반론보도청구회부 조항의 제척기간은 너무 짧으므로 이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신문의 경우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보도의 범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하며,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줬고 피해자도 있다면 선거보도로 봐서 심의해야”

김택근 위원

김택근 위원 : 대선 선심위 전까지 시정요구에 제척기간을 적용한 전례도 없고, 한참 전에 보도가 난 경우에도 시일이 흐른 후인 선거기간에 논란이 되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에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보도의 범위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줬고 피해자도 있다면 각하하지 않고 심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권문한 위원 : 선거기사의 범위에 관해서는 보도 당시에 이슈가 된 사안인 경우만 선거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피해자는 선심위가 아니더라도 언론중재위 일반 조정절차 이용도 가능한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현 위원 : 입법자가 반론보도청구회부조항에 제척기간을 별도로 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원 보도가 나온 직후 최대한 속히 반론이 나가도록 한 취지이므로 시정요구에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후보자가 선거 한참 전에 나온 보도에 대한 반론을 선거 직전에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무작정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사기업인 언론사의 재원마련 수단인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선거법상 시정요구에는 제척기간이나 청구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반론보도청구회부조항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

이준웅 위원

이준웅 위원 : 선거법상 시정요구에는 제척기간이나 청구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반론보도 청구회부조항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거기사 여부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라 정해진 점을 고려해야 하며, 시정요구인이 해당 기사에 대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하자가 없으면 해당 신청을 그냥 각하하지는 말고 심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선관위의 심의를 거친 적법한 선거광고는 선심위에서 심의하기가 부적절하므로 제외하고, 현행대로 의견광고 등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심의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선심위 상설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 선심위 때 논란이 된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 규칙,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사무처에서 선거법 개정 등 선심위 제도 및 운영을 전담할 상근 인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공약 비교 평가 보도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지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

박석태 위원

박석태 위원 : 공약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지 말고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논의가 있었습지만 선심위의 건설적인 논의사항이 제도개선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구의 상설화를 통해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후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문한 위원 : 이번 심의를 하면서 공약에 서열을 매기지 말라는 규정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일선 언론사에서는 이런 규정에 대해 잘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 미리 해당 규정의 의미와 취지를 전파하거나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장 : 결론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총 4개의 선거기사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역량을 잘 가다듬으면 상설화 등 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대선 선심위를 위해 심의에 애써 주시고 활발히 의견 개진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기사심의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